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중소벤처기업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를 위한 “1부처 1전문기관” 원칙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·시행(’21.1월)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위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산업기술단지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(안 제16조 개정)

- 1) 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업무
- 2)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·운영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업무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업무를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”을 “업무를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6조(권한의 위탁)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	제16조(권한의 위탁) ----- ----- ----- 업무를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연 락 처	(044) 204 - 7573